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추 경 호 장 관

●대통령령 제3402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	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ই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3.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 한다)가 아닌 것	20%
0301	99	기타		
		1. 돔		
		나.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2. 농어		
		나. 기타		28%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		
		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		
		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i>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		
		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		

스(Engraulis)속],정어리[사르디 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 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 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 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 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 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 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 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 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 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 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 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 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 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 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 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 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 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 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 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 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 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 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 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 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層肉)은 제외한

		다.		
0303	59	기타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	24%
			(Cololabis saira) (머리 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 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 한다)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 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 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層肉)은 제외한다.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22%
0303	69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 마 (T h e r a g r a chalcogramma)는 제외	22%

		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 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 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 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 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 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 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9	기타		
0306 95	새우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Crangon crangon)](염장이나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2. 그 밖의 새우류(염장 이나 염수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	32%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엄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3	냉동한 것		
		2. 오징어		
		가. 옴마스트레페스 (Ommastrephes)속・로리고 (Loligo)속・노토토다루스 (Nototodarus)속・세피오 투디스(Sepioteuthis)속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나. 기타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5	버섯과 송로(松露)		
0709	54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 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 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 (Aur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 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	
0712	34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 (內)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	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 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1000		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19	기타 2.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플레이크(flake)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	9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 모양의 쌀로서 찌 거나 삶은 것	5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 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1. 고추장	32%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 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 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플라이(ply)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 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 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 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 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 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 (Fraxinus)속]·너도밤나무[파 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 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		10%

		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 네아(Castanea)속]·느릅나무 [울무스(Ulmus)속]·유칼립투 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 ·히커리[카르야(Carya)속]·칠 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 속]·라임[틸리아(Tilia)속]·단 풍나무[아서(Acer)속]·참나무 [코커스(Quercus)속]·버즘나무 [플라타너스(Platanus)속]·포플 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 us)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 obinia)속]·백합나무[리리오덴 드론(Liriodendron)속] 또는 호 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 다]		
4412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 다]		10%
4412	4	단판적층재(LVL)		
4412	4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 미터 이하의 시트(sheet)	10%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4412	4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 미터 이하의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 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 미터 이하의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 미터 이하의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 미터 이하의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 미터 이하의 시트(sheet)	10%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